

공정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제38회, 9. 6) 등 정부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9. 12)하였다.

공정위는 동 법의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자율규약을 비롯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을 보강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그 사후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 등의 통합공고제도 도입(안 제4조)

▶ 현행

현행 중요정보고시는 2개 분야 24개 업종(유전자변형물질 분야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사업자 등의 표시·광고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법 제4조제1항 단서)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비자·사업자 등의 관련 정보이용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개선

공정위가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 관련 사항

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설치·운영(안 제4조의2)

▶ 현행

현행 중요정보고시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서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정보 발굴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협의함으로써 중요정보고시의 실효성 및 이행준수율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개선

관계행정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요정보를 발굴·평가하는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원활히 함으로써 중요정보고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표시·광고실증제도의 보완(안 제5조)

▶ 현행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정위는 사업자 등에게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현행 사업자 등의 실증자료 제출기간은 30일로 너무 길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예방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

▶ 개선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자 등의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

로 단축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 제출시 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표시·광고의 진실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억제한다. 사업자 등은 제출기간의 단축 등으로 인하여 표시·광고를 하기 전에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 등을 가지고 있어야 기간내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등의 활성화(안 제14조의2)**

▶ **현행**

공정위가 사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표시·광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현행 자율심의기구 등이 표시광고법과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못

하므로, 자율심의기구 등이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시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이 법 운용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개선**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 등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심의기구 등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심의기구 등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간의 자율적 시정기능을 확대한다.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요정보내용 고시 현황은 본지 부록(110면 이하) 참조.

공정위,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득수준의 향상, 삶의 질 추구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성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사용 등과 관련된 안전사항의 표시·광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을 제정,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내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소비자안전과 관련하여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에서 간략히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여 제정한 것이다.

동 심사지침은 소비자안전 관련 표시·광고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범위에서 일반적 심사기준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 심사지침에서는 공통지침과 업종별 지침을 두어 사업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통지침에서는 소비자안전과 관련성이 있는 상품 등의 유해성분 등 안전 관련 특성,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한 사항, 안전 관련 사항의 표시방법 중 부당한 표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① 인체에 유해한 성분(원자재)이 포함된 상품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그 사항이 소비자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② 상품 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연령, 성별, 효능 등 사용·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③ 상품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당해 사항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 또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된다.

또한, 소비자안전과 관련이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전기·전자제품, 레저 관련, 어린이 대상 상품 등』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관련업종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구체적 지침 예시

▶ “100% 천연식품 추출물인 이 OO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나타나는 탈수, 설사 증상 등에 대하여 이

를 흔히 발생하는 증상 또는 호전현상 등이 라고 하면서 그 부작용 증상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OO감기약병에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사용상 주의 내용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보통 소비자의 정상시력으로는 도저히 읽기 힘들 정도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

②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자동차의 충돌시험 결과 등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면서 정면충돌 등 그 특정 조건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모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OO매트가 99.6% 수맥차단효과가 있으며 각종 질병이나 질병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에 대해 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미용·레저 등 용역의 제공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새롭게 개발된 미용서비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놀이시설 등 레저시설물 관련 “보호자 동반 이용, 이용 제한연령, 임신부·노약자 등 이용제한 등”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④ 어린이 관련 상품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어린이 등이 주로 사용하는 폭죽 제품에 안전상 필요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영문이나 한자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어린이 등이 이를 오인하여 안전과 관련한 주의를 하

기 어렵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제품 OO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정말 귀한 유기농 원료로 만든 OO”이라고 표

시·광고하는 경우

※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전문은 본지 부록(116면 이하) 참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제조·건설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반복적인 범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9월 21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정 하도급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하도급법 개정·시행('05.7.1)으로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및 역무의 공급위탁(이하 '용역위탁'이라 함)이 법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위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으며, 하도급법 개정으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예시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의 자율적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제조·건설위탁 분쟁조정 의뢰범위를 확대하였고, 용역위탁 분쟁조정 요청범위를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2.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게도면 등 납

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법 제18조), 넘겨받은 기술자료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법 제4조), 그리고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는 소위 '배타적 전속거래'를 부당한 경영간섭(법 제18조) 예시규정에 추가하였다.

또한,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 촉진 및 경쟁입찰의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또는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벌점 감점 1점에서 2점으로 강화하였다.

3. 기존 지침운용 과정상 문제점 개선

반복적 범위반 업체에 대한 공표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 요건이 되는 하도급벌점 기준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공사에 기존 정부·지자체 발주공사 외에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

는 행위를 하도급대금 부당감액(법 제11조) 예시규정에 추가하였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지 부록(120면 이하) 참조.

기술자료예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5일 IT, SI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의 도입(제20조의 2 신설)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은행 등)에 예치하고,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치기관이 원사업자에게 열람·사용하게 하였다.

▶ 중소하도급업체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양변경, 작업기간·물량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였고,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선급금·준공금·기성금 지급 및 현금결제비율 준수 등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를 규정하였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

하도급법의 개정·시행('05. 7)으로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감액 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부당감액의 유형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관습에 따르게 하던 것을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상관습에 따르게 하였다(제28조 전단). 또한 분쟁조정기관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외에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서의 핵심내용을 규정하는 전문(前文)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였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해당 업계에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05. 9,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할 방침이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란 구매 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납품업체와 구매 기업이 미리 합의한 요건(납품업체의 도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구매 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

선진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 24. 공정위 전반 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전반기의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조직 역량 제고와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될 공정위의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1.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차질 없는 마무리 및 후속조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계속 받고 있는 기업집단의 졸업을 적극 유도하여 계획대로 시장자유규제로의 조기 전환을 도모하며, '07년 종합평가에 대비한 준비·점검작업을 진행중인 한편, 기업·시장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중간평가(2003~2004)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9. 30 최종보고 예정)에 있고, 민·관 합동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을 연구중이다.

또한, 2007년중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여부를 최종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업별 자율규율방식에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2.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방식을 정착

외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산시키고, CP 평가모델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CP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자율규제의 정착을 위해 기 도입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한 조정제도와 사인의 법원에 대한 금지청구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3.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

지금까지 부당한 가격결정 및 거래조건 시정을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05. 3)하고,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개정('05. 6) 등을 통해 유통분야 거래조건을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교섭력 및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4월 마련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가격결정 절차에 대한 모델을 마련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조사·발표하는 등 가격결정 구조·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예치제(Escrow) 도입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등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05. 7월부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담당과 신설 등 추진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서비스분야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4.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시스템 구축

사업자 자율규제(CCMS) → 민간단체(분쟁조정) → 공정위(분쟁조정과 법집행과의 연계 강화) → 사법기관(사법적 구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구제 지연으로 인한 만성적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며,

소보원·소비자단체와의 효율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5.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등 공정위 역량강화 추진

정부혁신위원회의 공정위 기능 조정방안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현재 마련중인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조직과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체계를 전면적인 본부 팀제로 개편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 심판관제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

일 내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쟁정책연구 기능(Policy R&D) 강화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06년중 외부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사건절차규정의 법제화, 행정심판관제도 및 동의명령제도 등 조사·심결제도, 조정제도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대기업집단제도의 개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005. 8월·9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5년 8월·9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5. 8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5. 8. 1.	편 입				제 외							증감	2005. 9.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1개)	296	1	-	-	1	3	-	-	-	-	-	3	△2	294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5개)	992	6	4	2	12	10	1	-	-	-	-	11	1	993

〈2005. 9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5. 9. 1.	편 입				제 외							증감	2005. 10.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1개)	294	-	2	3	5	-	2	-	-	-	-	2	3	297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5개)	993	2	6	5	13	1	3	-	3	-	-	7	6	999

〈2005. 8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2개사

◆ 제외 : 11개사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금호아 시아나	중부복합물류(주)	일반화물터미널	회사설립	-	-	-
롯데	대선건설(주)	중합건설업	지분취득	-	-	-
한진	부산인터내셔널 컨테이너터미널(주)	항만시설관리운영	회사설립	-	-	-
	광양인터내셔널 컨테이너터미널(주)	"	"			
씨제이	(주)애니파크	뉴미디어 영상기술이용 전문프로그램제작	지분취득	-	-	-
	단지넷(주)	인터넷서비스업	"			
동국 제강	(주)유일전자	휴대전화기용 키패드 제작 및 판매	지분취득	-	-	-
	(주)유일테크	"	기타			
	(주)유일폴리마	"	"			
대성	(주)알파서비스	도시가스 수용가 관리	회사설립	서울에너지 환경(주)	증기 및 온수공급업	합병
	(주)베타서비스	"	"	알파정보통신(주)	정보통신공사업	"
	(주)감마서비스	"	"	베타정보통신(주)	"	"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대 성	-	-	-	감마정보통신(주)	정보통신공사업	합병
	-	-	-	델타정보통신(주)	"	"
	-	-	-	오메가 정보통신(주)	"	"
지에스	-	-	-	(주)코스모레저	스포츠용품 및 의류수출업	합병
두 산	-	-	-	(주)두산타워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	"
	-	-	-	(주)비스툼	평판디스플레이 전용부품개발	"
세 아	-	-	-	(주)맥웰드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	-	(주)아이즈비전	기타 통신판매업	지분매각

〈2005. 9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3개사

◆ 제외 : 7개사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현 대 자동차	(주)현대오토넷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지분취득	-	-	-
	(주)만도맵앤소프트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기타			
	(주)폰터스맵	"	"			
에 스 케 이	(주)서울음반	기록매체 복제업	지분취득	에스케이텔레텍(주)	통신장비 제조	지분매각
한국철 도공사	일양식품(주)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	기타	-	-	-
씨제이	(주)게임알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분취득	-	-	-
	씨제이코드(주)	영화 등 각종 영상물 제작	회사설립			

기업 집 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씨제이	(주)월드이스포츠케 임즈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지분취득	-	-	-
하이 트 맥 주	(주)진로	주류 및 석수 제조업	지분취득	-	-	-
	(주)제이엠엘	주류수출 중개업	기타			
	제이알종합건설(주)	건설토목공사 등	”			
태 광 산 업	아산케이블방송(주)	종합유선방송업	지분취득	-	-	-
	동림관광개발(주)	부동산업	회사설립			
두 산	-	-	-	현대알루미늄(주)	창호·철물· 판넬 공사업	지분매각
케이티 앤 지	-	-	-	(주)한빛향료	화합물 제조	”
에스티 엑 스	-	-	-	(주)효림엔지니어링	산업기계 및 조선 기자재 제조업	합병
세 아	-	-	-	(주)한국클리버스	분노처리시스템	친족분리
				(주)객신시스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리업	”
				지인인터내셔널(주)	도매 및 상품중개업	”

공정위 인사동향

▶ 발 령 ◀

8. 25.

기획관리관실 혁신인사기획관에 포함.

서 기 관 김길태(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1담당관)

8. 30.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1담당관에 포함.

부 이 사 관 옥화영(경쟁국 경쟁촉진과장)

9. 1.

경쟁국 경쟁촉진과장에 포함.

서 기 관 이석준(독점국 기업집단과장)

EU 정책연구소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서 기 관 배진철(공정거래위원회)

(기간 : 2005. 9. 1~2006. 8. 31)

9. 6.

기획관리관실 종합상담실장(과장)에 포함.

서 기 관 장재군(기획관리관실 종합상담실장)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대책팀 파견근무를 명함.

서 기 관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

9. 7.

복직을 명함.

서 기 관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집단과장에 포함.

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장에 포함.

서 기 관 김석호(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장)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장에 포함.

서 기 관 김정주(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장)

9. 9.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행정사무관 박범서(공정거래위원회)

(기간 : 2005. 9. 9~2005. 12. 31)

9. 1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부 이 사 관 이성구(공정거래위원회)

(기간 : 2005. 9. 12~2006. 9. 11)

9. 13.

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 근무를 명함.

서 기 관 이준길(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한유성(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영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 2005. 9. 13~2006. 9. 12).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2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3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정책국 총괄정책과 근무를 명함.
 복직을 명함.
 정책국 국제기구과 근무를 명함.
 독점국 기업집단과 근무를 명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경쟁국 가맹사업거래과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구상모(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
 행정사무관 고행석(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민혜영(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
 행정사무관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전중수(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준헌(정책국 국제기구과)
 행정 주 사 오석정(경쟁국 공동행위과)

행정 주 사 심재무(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2담당관실)

행정 주 사 함창주(독점국 기업결합과)

9. 20.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병역휴직)에 의거 휴직을 명함.

행정사무관 이준헌(공정거래위원회)

9. 21.

하도급국 건설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 근무를 명함.

기술서기관 이달영(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
 행정사무관 김성근(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전동혁(공정거래위원회)

9. 23.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권성옥(감사담당관)

9. 26.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기간 : 2005. 9. 26~2006. 9. 25).

행정사무관 표순민(경쟁국 가맹사업거래과)

9. 30.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파견근무를 명함(기간 : 2005. 9. 30~2005. 12. 31).

행정사무관 설춘호(조사국 조사2과)